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변경 전 신고사항	신고일자	신고번호
	업종별 누적투자금액	
③ 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업종변경 시에는 ③란에 변경 전·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2.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지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